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5년 3~5월(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공시시기】 : 2025년 6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

【공시내용】 : 2025학년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선발 결과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5년 3월 학기 신입생(3월 기준))

(단위 : 명, %)

기준 연도	총 입학자 (A)	기회 균형 선발 결과															기회 균형 선발 비율 (%) (B/A×100)				
		제1호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학교 졸업자			특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기회 균형 선발 결과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기회 균형 선발 비율 (%) (B/A×100)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아동복지 보호(종료) 대상자 등			북한이탈주민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만학도 (성인학습자)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정원내	정원의	소계	

※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

■ 검증사항

【총 입학자】 : <4-가> 최종 등록인원, <4-자> 총 입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

■ 작성지침

【기회 균형 선발】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각호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구체적으로는 위 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미

【총 입학자】 : 2025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정원내와 정원의외를 포함

【제1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1호_장애인 등 대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의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한 지원자격에 따른 대상자

참고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 한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참고

선정된 사람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호: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 장애 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다. 국가 보호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 등급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호_농어촌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의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1호_특성화고 졸업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의거 특성화고(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졸업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자

【1호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의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

【1호_기초생활수급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1호_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호_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법 제4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호_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3호_서해5도학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한 각호의 사람

【4호_아동복지보호(종료) 대상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 ※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호_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호_만학도(성인학습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 보상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 ※ 만학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의2호에 따른 성인학습자

【기회 균형 선발 비율(%)】: (기회 균형 선발에 의한 입학자 수 / 총 입학자 수) × 100

■ 참고사항

- 기회 균형 선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